

의안번호	2207924
의 퇴 인	정일영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0.
추 계 번호	25F069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, 양자컴퓨터 등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(친환경 선박 포함), 양자컴퓨터 등을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10개로 확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, 양자컴퓨터를 포함하는 경우, 해당 분야의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)
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
	대기업	1	3	15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로 확대
 - 국가전략기술 분야:
 -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(친환경 선박 포함),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 추가
 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, 양자컴퓨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는 현재 신성장·원천기술 중 지능정보 분야에, 미래형 운송수단 관련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포함되어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미래형 자동차 등 범위

기술		기술
지능 정보	인공 지능	(학습 및 추론 기술)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, 딥러닝, 지식베이스 구축 등 (언어이해 기술) 텍스트,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응대하는 자연어 처리 등 (시각이해 기술) 비디오, 이미지 등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을 파악하는 컴퓨터 비전 등 (상황이해 기술) 다양한 센서를 통한 환경정보 이해, 대화상대의 감정 이해 등 (인지컴퓨팅 기술) 저전력·고효율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 재설계,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 등
	양자 컴퓨터	(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) 양자정보 처리용 메모리(큐비트) 구현, 큐비트간 연산처리 장치 제작기술, 양자컴퓨터의 구동·원격사용 및 계산 등 활용기술
미래형 자동차	자율 주행차	(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) 자율주행기록및사고시점등정보저장및분석기술 (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) 탑승자 안전인식을 통한 상태변화 감지 기술 및 모션·음성·터치 등을 통한 운전 등 상호작용 기술 등
	전기 구동차	(전기차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기술)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방식,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핵심 모듈 등 (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) 엔진 열효율 45% 이상의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

- 또한, 인공지능 등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 - － 참고로, 2023년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3년 신고기준(잠정치)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23,760	9,492	11,968
통합투자세액공제	10,332	38	7,4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